

영등포구의회
제157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0. 12. 3.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李 憲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8호로 2010년 11월 1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개정(제안)이유

이 조례안은 2010.12.31 현행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 만료와 2011.1.1 새로운 지방세 관련법 시행에 따른 지방세 감면 규정의 통합·정비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조례」로 함

나. 조례제정 목적(안 제1조)

다.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2조~안 제16조)

- 1)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 2) 지방의료원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 3)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 4) 지방공사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 5)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재산세
- 6)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재산세
- 7)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 8)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 9) 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 대한 재산세
- 10)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 11)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재산세
- 12)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재산세
- 13)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재산세
- 14) 서울특별시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재산세
- 15)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라. 보칙

- 1) 재산세 감면 사항 중 직접사용의 의미(안 제17조)
- 2) 감면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3) 각종 감면신청 및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4) 감면자료의 제출에 대한 사항(안 제20조)
- 5) 중복감면 배제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 6) 토지에 대한 재산세 경감율 적용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분법되면서 제정된 「지방세법특례제한법」에 위임된 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상정된 안건임

● 주요 개정내용은

-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조례」로 하고,
- 「지방세법특례제한법」에 명시되어 중복된 감면사항 8개 조항 삭제
- 지방의료원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구세 전환으로 감면조항 신설
- 그 밖에 지방세 관계법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감면대상·요건·범위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용어 정비
- 전부개정으로 인한 기존 감면대상, 요건, 범위에 대한 변경은 없음

개정전	개정후
제1장 총칙 ○목적(§1)	○목적(§1) ※문구정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2)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함)(§29) 이관>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3)	○현행과 같음(§2)
<u><신 설></u>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3) -등록면허세 신설로 감면발생 가능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4)	<지특법(§20) 이관>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5)	<지특법(§44) 이관>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6)	<지특법(§42) 이관>
○문화재에 대한 감면(§7)	○문화재에 대한 감면(§4)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제외 <지특법(§55) 이관>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8)	<지특법(§14) 이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9)	<지특법(§31) 이관>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10)	<지특법(§84) 이관>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11)	<지특법(§16) 이관>

개정전	개정후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12)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5) -등록면허세 추가, 종전 사업소세 제외
○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13)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6) -아파트형공장 명칭 변경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14)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7) -사업시행용부동산 <지특법(§83) 이관> -시장현대화보조금 취득재산 (현행과 같음)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15)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8) -등록면허세 추가, 종전 사업소세 제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16)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9) -등록면허세 추가, 종전 사업소세 제외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17)	○현행과 같음(§10)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18)	○현행과 같음(§11) ※ 문구정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19)	○현행과 같음(§12)
○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20)	○현행과 같음(§13)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21)	○현행과 같음(§14)
○서울특별시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22)	○현행과 같음(§15)
○관광호텔용부동산에 대한 감면(§23)	○현행과 같음(§16) ※ 인용조문 정비
○직접사용의 의미(§24) ○감면 제외대상(§25) ○감면신청 등(§26) ○감면자료의 제출(§27) ○중복감면의 배제(§28)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을 적용 (§29) ○시행규칙(§30)	○현행과 같음(§16) ※ 인용조문 정비

● 종합적으로 이 조례안은 현행 구세 감면 조례 적용시한 2010.12.31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등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제정으로 위임 사무에 대한 조례안이며 행정안전부의 표준 준칙안에 따른 전부개정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됨

관 계 법 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3.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
4.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5.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6.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7. “재산세”란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